

#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안내

## 신청대상

- 기업이 수행한 연구개발활동 또는 지출한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공제대상 연구·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

\* 여러 연구과제 중 특정과제만 선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, 결산 마감전이라도 지출예정인 비용을 신청할 수 있음

## 신청기한

- 법인세 신고 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, 과거 사업연도 공제를 누락한 부분은 경정청구 전에 신청 가능

## 신청방법

- 홈택스\*([www.hometax.go.kr](http://www.hometax.go.kr)), 우편, 방문접수(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)

\* 신청경로 : 신청/제출 > 신청업무 > 연구·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(신청 후 홈택스 화면에서 심사담당자와 심사진행 현황을 확인 가능)

## 제출서류

- 연구·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
- 연구개발비 명세서
- 연구개발 보고서
- 급여대장, 연구노트 등

### 사전심사 필요성

-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·인력개발 활동 여부, 공제 대상 비용 범위 등에 대해 사업자와 과세관청 간 견해 차이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
-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세액공제가 잘못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, 수년간 공제 받은 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정되어 사업자에게 법인세 부담이 가중되므로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하여 사전에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음

### 사전심사 혜택

- 심사받은 내용에 대한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제외
- 추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
-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컨설팅 등 자문서비스 제공